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

[시행 2023.04.07]
(일부개정) 2023.04.07 조례 제2829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소 건강증진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43-540-562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7.19.>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7.11, 2019.7.19.>

1. "건강증진사업"이란 보은군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서 보은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3. 4. 7.>

가. 금연, 절주, 신체활동, 영양, 비만예방, 구강보건, 심뇌혈관질환관리, 한의약건강증진, 아토피·천식 예방, 모자보건, 치매, 지역사회 중심재활, 방문건강관리, 감염병관리,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

나.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("도시"란 지방자치단체로서, 이 조례에서는 보은군을 말한다)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
다.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

2. <삭제 2014.07.11>

제2장 군민 건강관리

제3조 (건강증진사업 지원) 보은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군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 (건강증진사업 실시)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9.7.19.>

③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7.>